

입법평가 회의자료집 ④

「 가
가」 1 가

2010. 2. 17.

전문가회의 일정

- 목 적 :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어업허가 일체정비」에 관한 입법평가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사전적으로 연구추진의 방향, 절차, 방법, 내용에 관한 전문가 자문을 얻고자 함
- 일 시 : 2010. 2. 17(수) 12:00~15:00
- 장 소 : 양재동 디오라마
- 참석자

구 분	성 명	현 소속 및 직위	비 고
농림수산식품부	박 규 호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장	원외
"	김 태 기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서기관	"
"	이 영 직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서기관	"
"	이 세 오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사무관	"
법제처	이 정 규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
시 · 도	김 종 섭	충청남도 수산과	"
"	양 응 렬	전라남도 완도군 해양수산과	"
민간	한 규 설	어촌·어업분야 전문가	"
"	이 광 남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장	"
학계	김 병 호	부경대학교 교수	"
정부출연연구원	류 정 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	이 순 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원내
"	윤 광 진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	차 현 숙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	윤 석 진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	윤 계 형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
"	조 용 준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

전문가회의 일정

□ 회의내용

- 배경 설명
 - 어업허가 일제정비 제도의 도입의 추진배경 및 계획 설명
 - 어업허가 일제정비 제도 도입에 관한 입법평가 연구계획 설명
- 전문가 의견 교환 등
 - 연구의 추진방향
 - 연구의 절차 및 방법
 - 연구의 유의점 등
- 향후 전문가회의 개최 일정 조정 등.

목 차

- 연구계획서안 :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평가 7

- 연구계획서안 :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 도입의 비용효과분석 13

- 「연근해 어업허가 일제정비」 정착 21

연구계획서안

- 연구과제명 : 어업허가 일체정비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평가
- 연구제안자 : 입법평가연구센터(주문형 수시과제: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허가기간 만료시 마다 새로운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면허나 허가를 받은 자는 1년 이내에 어업을 시작하도록 하고, 2년이상 휴업을 금지하고 있으며, 1년이상 휴업할 경우에는 행정관청에 신고토록 규정
 - 면세유 공급, 어업보상, 감척사업 참여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조업을 하지 않으면서 어선만 보유하는 등 수면의 종합적 이용·관리라는 수산업법 입법목적에 정면 배치
 - 유희어업 예방과 신규어업 진입해소, 어업허가의 효율적 관리, 어업질서 유지를 위해 어업허가를 일정시기에 일괄적으로 재발급하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필요
 - 이 연구는 현행 수산업법상의 어업허가에 대한 일체정비 및 이를 위한 수단인 전자허가증 도입에 관한 입법평가연구를 통해 유희어업을 예방하여 어업허가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규진입이 제한된 어업허가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연구임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과제명: 수산자원관리제도 개선방안연구 -연구자(년도): 전재경 외 (2005) -연구목적: WTO/FTA 체제형성에 따른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수산자원관리법의 제정	-문헌조사 -사례조사 -공청회 개최	-수산업법에 관한 법리연구 -외국법제연구 -수산자원관리법제 연구 -재량행위 투명화 연구
	2 -과제명: 어업허가의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연구자(년도): 차철표(2004) -연구목적: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고찰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	-문헌조사 -법해석학적 방법론	-어업허가의 일반적 특징 -어업허가의 우선순위 -어업허가 우선순위의 개선방안
	3 -과제명: 수산업육성발전법 제정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자(년도): 이순태(2008) -연구목적: 수산업육성에 관한 정책수단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수산관계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규정을 종합하여 수산업육성발전법 제안	-문헌조사 -법정책학적 방법론 -전문가 연구 협의	-수산업 관련 법령의 주요내용 및 상호관계 -비교법 연구 -수산업육성발전법(안) 및 수산관련 법안 작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비교
본 연구	-기존 연구는 규범체계에 관한 연구 및 규범의 내용에 관한 전통적 법학방법론을 사용한 연구임 -본 연구는 기존의 법학방법론이나 문헌연구 중심에서 탈피하여 규범분석 뿐만 아니라 설문분석, 비용효과분석 등의 입법평가 방법론을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임	-설문분석(전문가조사) -비용효과분석	-어업허가 일제정비 제도도입에 관한 규범분석 -전자 어업허가증 제도도입에 관한 규범분석 -도입 필요성 및 수용성에 관한 설문조사분석 -도입에 관한 비용효과분석

■ 주요 연구내용

-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도입 가능성에 관한 규범분석
 - 제도도입에 관한 행정적·법리적 장단점 분석
 - 제도도입시 개정할 관계 법률 및 내용 검토
- 전자 어업허가증 제도 도입의 규범분석
 - 전자 어업허가증 도입관련 법적 타당성
 -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관한 법적 검토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설문조사분석
 -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의 도입에 관한 전문가 및 수범자 설문조사분석
 - 전자 어업허가증 제도 도입에 관한 수범자 설문조사분석
- 비용효과분석
 -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 도입의 비용효과분석
 - 전자 어업허가증 제도 도입의 비용효과분석

■ 연구추진방법

- 입법평가 연구
- 학제간 연구(법학, 경제학, 행정학, 통계학 등 공동연구)
- 문헌연구/ 실태조사/ 입법의회견조사/ 전문가회의

■ 기대효과

- 유희어업 예방과 신규어업 진입해소
- 어업허가의 효율적 관리

어업질서 유지

협동연구기관 및 연구진구성

협동연구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대학·연구소·수산업협동조합, 한국수산회 등과의 산학민협력

연구진

- 원내연구진 : 윤광진(책임연구자, 행정학박사)
이순태(공동연구자, 법학박사)
조용준(공동연구자, 경제학박사)
- 외부연구진 : 한규설(전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위원)
김병호 교수(부경대학교)
류정곤 연구위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광남 수산정책연구소장(한국수산회)
이영직 서기관(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이세오 사무관(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담당분야	성명	소속	직위	연락처
법제평가분야	이순태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센터장, 법학박사	02-3498-8768 stlee@klri.re.kr
	이영직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서기관	02-500-2357 young222@kfs.go.kr
	한규설	전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위원	018-573-4315
법경제평가 분야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감리단, 경제학박사	02-2105-2845 010-4115-8983 jkryu@kmi.re.kr
	이광남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장, 경제학박사	02-589-0627 lkn6530@chol.net
	조용준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센터, 경제학박사	02-3498-8835

연구계획서안 :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평가

담당분야	성명	소속	직위	연락처
법정책평가 분야	이세오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사무관	02-500-2359
	김병호	부경대학교	해양산업경영학 부 교수	051-629-5956 011-863-6516 kimbh@pknu.ac.kr
설문·통계 분야	윤광진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센터, 행정학박사	02-3498-8774

▣ 연구기간

2010.1.-2010.10

○ 2010.1 - 2010.10(10개월)

구 분	2월	3월	4월	5월	6월
연구 수행 계획					
■ 어업허가 일제정비 제도도입 관련 법령 분석					
1. 관련 법령의 분석 및 검토					
2.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3. 개정어업허가 일제정비 실시요령 작성					
■ 전자어업허가증 교체에 대한 평가					
1. 전자어업허가증 교체의 정책평가					
2. 설문조사 실시 및 분석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 도입에 대한 입법평가」 제1차 전문가회의

구 분	2월	3월	4월	5월	6월
3. 비용효과 분석					
4. 종합검토					
전문가 자문					
전문가 회의 및 워크숍	○	○	○	○	○
기 타					
국외출장					
연구심의회			○		○

연구계획서안

▣ 연구과제명 :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 도입의 비용효과분석

▣ 연구제안자 : 이광남 소장(수산정책연구소)

1. 분석의 내용

가. 분석의 개요

- 유희어업 예방과 신규어업 진입해소, 어업허가의 효율적 관리, 어업질서 유지 등을 위한 어업허가를 일정시기에 일괄적으로 재발급하는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 도입 및 전자 어업허가증 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효과분석을 실시
- 어업허가 일제 정비제도의 도입시는 실제 없이 어업허가장만 보유하고 있는 어선, 허가받은 어선과 다른 어선, 장기간 조업실적이 없는 방치어선, 휴업신고 등 미 이행 어선, 타인으로 하여금 어업을 지배하고 있는 어선 등에 대한 체계적인 파악과 정리를 통하여 불법어업의 방지 및 어업구조조정 사업의 실효성 확보 등 사회적으로 편익이 발생함
- 또한, 유희어선 및 허가장만 보유한 어선 등으로 인해 수산정책 및 자원관리에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연근해어업의 MSY, CPUE 등 추정
 - 연근해어업의 허가정한 수 조정시 오류
 - 기초통계자료의 오류로 인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 도출 오류

- 전자 어업허가증 제도는 현행 서류에 의해 발급, 보관, 관리 되는 어업허가증을 스마트 카드하여 허가증의 훼손 방지 및 휴대의 편리성 확보, 어업허가확인의 간편화, 어업허가증 위조의 방지 등의 편익이 발생
- 동 분석에서는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 및 전자 어업허가증 제도 도입으로 인한 발생하는 사회적 직·간접적 잉여를 추정하고, 제도를 도입하였을 경우의 사회·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함

나. 분석의 세부내용

- 1)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분석
 -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 사회적 편익 추정(Benefit)
 - 어업구조 조정사업 효율성 상쇄방지 효과
 - 불법어업 진입금지(어업허가장만 보유, 타인 어업지배, 어업허가 상의)효과,
 - 단속비용 감소효과
 -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 사회적 비용 추정(Cost)
 - 제도도입 비용
 - 어업인 제도도입 순응비용 등
- 2) 전자 어업허가증 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분석
 - 전자 어업허가증 제도 사회적 편익 추정
 - 허가증의 훼손 방지 효과
 - 불법어업 방지효과
 - 어업허가확인의 간편화 효과
 - 어업허가증 위조의 방지로 단속비용 감소 효과 등
 - 전자 어업허가증 제도 사회적 비용 추정

- 어업허가증 시스템 장비 비용
- 시스템 운영비용
- 어업인 제도도입 순응비용 등
- 중장기적 효과분석
 - 시나리오에 따른

3) 제도 도입의 중장기적 효과분석

- 중장기적 효과분석
 - 현실 상황을 반영한 시나리오 설정
 - 시나리오별 중장기적 제도도입의 사회적 효과분석
- 제도도입 경제적 타당성 분석
 - 유무검증을 통한 사업을 수행할 경우(with the project)와 수행하지 않을 경우(without the project)의 차이 비교
 - 시나리오별 제도도입 타당성 분석(NPV, IRR, B/C ratio)

2. 연구방법

가. 제도도입 사회적 편익 및 비용 항목 선정

- 기존 보고서 및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한 문헌조사
- 전문가자문회의 및 Delphi 기법을 통한 항목 선정
- 통계자료 및 관련 부처의 내부자료를 기초자료한 Normalization

나. 제도도입에 따른 비용 및 편익추정

- 시나리오 기법을 통한 중장기 제도도입 B/C 분석
- 순현재가치 방법
 -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 방법은 평가 대상기간의 모든 비용과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고, 총 편익에서 총 비용을 뺀 값을 바탕으로 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기법

$$\text{순현재가치} = \sum_{t=0}^n \frac{B_t}{(1+r)^t} - \sum_{t=0}^n \frac{C_t}{(1+r)^t}$$

여기서, B_t : t년도의 편익

C_t : t년도의 비용

r : 할인율

n : 내용년수

- 순현재가치가 양(+)의 값이면 편익이 비용을 초과하는 것으로 그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

○ 편익/비용 비율방법

- 편익/비용 비율(B/C ratio)은 평가기간동안에 발생하는 총 편익을 총 비용으로 나눈 비율임
- 편익/비용 비율이 1을 넘어서면 사업으로 인해 얻는 편익이 투입된 비용보다 많게 되므로 그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데, 여기서 매년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사용함

$$B/C = \frac{\sum_{t=0}^n \frac{B_t}{(1+r)^t}}{\sum_{t=0}^n \frac{C_t}{(1+r)^t}} = \frac{\text{총편익의현재가치}}{\text{총비용의현재가치}}$$

- 편익/비용 비율방법은 비용과 편익이 발생하는 시간을 고려할 수 있고, 다른 평가 기준보다 이해가 쉬워 경제성 평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나, 미래의 편익과 비용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할인율을 사용하므로 적정 할인율의 결정이 올바른 평가의 관건임

○ 내부 수익률 방법

- 내부 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IRR)은 투자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에 기대되는 예상 수익률로서, 평가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총 편익의 현재가치와 총 비용의 현재가치가 같아지는 할인율을 말함

- 사업 평가기간 동안 모두 회수함과 동시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용의 가득력을 의미하므로 그 사업에 투자된 비용의 수익성(내부 수익률)이 다른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최대수익인 자본의 기회비용(사회적 할인율)보다 클 경우, 그 사업은 경제적 수익성이 있다고 봄

$$\sum_{t=0}^n \frac{B_t}{(1+\gamma)^t} = \sum_{t=0}^n \frac{C_t}{(1+\gamma)^t}$$

- 이 방법은 순 현가나 편익/비용비를 구하는데 어떤 할인율을 적용해야 할지 불분명하거나 어려운 점이 많을 때 주로 적용하는데, 내부 수익률 방법은 결과치가 평균치인 비율로 표시되므로 투자규모의 차이가 기업의 자산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현금흐름이 불규칙할 경우 해가 불능인 경우도 있음
-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경제적 타당성 평가분석기법들 중에서 순현재가치법(NPV)이 개념적으로 자본예산편성을 위한 최선의 기법이라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여러 기법의 사용하는 이유는 투자결정이 미래의 불확실성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기법을 적용함
- 최근에는 내부수익률법(internal rate of return: IRR)과 순현재가치법(NPV)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다. 제도도입의 타당성 분석

- 정량적 효과 및 정성적 효과 판별
 - 계량적 기법을 통한 수치제시와 더불어 간접적으로 계량화할 수 없는 편익 및 내용 종합분석
- 시나리오 기법을 통한 중장기 제도도입 타당성 분석(유무검증이용)

- 유무검증은 편익-비용분석시에 사업을 수행할 경우 (with the project)와 수행하지 않을 경우(without the project)의 차이에 의거 파악하는 증분적 사회효과의 흐름원칙을 기준으로 함
- 사업에 대한 증분적 효과란 투자안이 있는 경우(with project)의 미래 편익흐름과 투자안이 없는 경우(without project)의 미래 편익흐름간의 차이로서 투자안의 채택여부는 그 투자안에서 발생하는 편익흐름의 증분만을 고려하면 되는데 이를 독립기업의 원칙(stand-alone principle)이라 부름
- 이를 감안하여 유무검증에서 순편익흐름(net benefit flows: NBF)은 아래의 식과 같이 설명 될 수 있음

$$\begin{aligned}
 &= NB_t^w - NB_t^{wo} = (TR_t^w - TC_t^w) - (TR_t^{wo} - TC_t^{wo}) \\
 &= (PQ_t^w - FC - v_t^w Q_t^w) - (PQ_t^{wo} - FC - v_t^{wo} Q_t^{wo}) \\
 &= P(Q_t^w - Q_t^{wo}) - v_t^w(Q_t^w - Q_t^{wo}) + (v_t^w - v_t^{wo})Q_t^{wo}
 \end{aligned}$$
- 동 제도도입 사업의 경우 사업의 유무검증과 전후검증은 동일한 것으로 가정을 하는 것이 타당함 전후검증은 사업을 수행하기 전(before the project)과 수행하기 후(after the project)의 차이에 의거한 편익-비용을 파악하는 기준 예)

(A) 제도개선사업 수행하지 않을 경우	편익 100
(B) 제도개선사업 수행한 경우	편익 200
(C) 제도개선사업 이전의 경우	편익 50
-전후검증에 의한 편익 증가 (B)-(C) : 150	
-유무검증에 의한 편익 증가 (B)-(A) : 100	

3. 연구 기대성과

-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 및 전자 어업허가증 제도 도입에 따른 구체적·정량적 경제 효과 규모제시
-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입장에서 국가적 정책의 경제적 타당성 결과제시 및 향후 관리전략 및 정책방안 제시
-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타당성 평가 방법론을 통하여 제도개선에 대한 효율성 제고

예)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N
중기				
장기				
NPV	도출값			
IRR	도출값			
B/C ratio	도출값			
타당성결과 종합				

「연근해 어업허가 일제정비」 정착

< 추진 배경 >

□ 어업구조조정사업의 실효성 확보

- 연근해어선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94년부터 현재까지 어선감척사업 실시”중

* 1조 3,416억원을 투입, 총 13,660척 감척(연안 11,280척, 근해 1,072척, 국제감척 1,308척)

[어선감척 현황('04~'08)]

구 분	감척계획('04~'10)		감척실적('04~'08)		감척비율	
	척수	금액(억원)	척수	금액(억원)	척수	금액
합 계	16,610	12,750	11,718	4,941	70.5%	38.8%
연안어선	15,330	7,665	11,280	3,443	73.6%	44.9%
근해어선	1,280	5,085	438	1,498	34.2%	29.5%

- 어선감척 후 방치된 어선을 매입, 재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 무조업선 일제정비를 통한 “감척사업의 실효성 확보”

* '05~'06년 2개년간 면세유 공급 및 입출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안어선 56천여척중 18천여척이 면세유나 입출항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07.7)

□ WTO-DDA 및 고유가 시대에 대응

- 향후 수산보조금의 축소가 예상되고 어업용 면세유 공급가격 상승시 출어포기 등 생산 활동 위축 우려

(사례) 면세유 가격 : ('03.12) 63,260원 → ('08.5) 172,360원 180% 상승

- 우리어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무조업선 퇴출 등 “주기적 어업허가 일제정비가 필요”한 시점



1 가

- 연근해어업 허가는 “어선톤수에 따라 근해·연안·구획어업”으로 분류하고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처분(수산업법 제43조)
- 어업허가 유효기간은 5년(수산업법 제45조)
- “어업허가 처분은 총 77천건”으로 연안어업이 85.7% 차지

	계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허가건수	77,755	3,957	66,660	7,138
어선척수	61,982	3,475	52,223	6,284
처분권자	-	장관 (시도지사 위임)	시도지사 (시장·군수 위임)	시장·군수
어선톤수	-	8톤이상	8~10톤미만	5톤미만

2 가

- “어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어업허가 폐지” 신고토록 규정 (수산업법 제47조)
- “어업개시전 휴업금지”, “2년이상 휴업금지”(수산업법 제32조)
 - * 1년이상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어업허가 처분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함
- “타인으로 하여금 당해어업의 경영지배금지”(수산업법 제34조)



1

- 일부 어업인들은 허가받은 어선 없이 “허가증만 소지하고 감척 사업에 참여”하는 등 어업구조 조정사업 무력화 조장
 - 면세유 공급 목적으로 “어업허가증만 보유”한 어선도 다수 추정
- 당해 허가받은 어선이 바뀌는 경우 새로운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의 어선대체 성행”으로 허가관리 애로
 - 일부 2톤미만의 허가어선은 어선검사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이용, 임의적으로 어선을 변경하는 등 허가제도 문란 초래
- 서해일원에서는 “어업허가증을 복사·변조”하여 등록되지 않은 어선을 이용하여 불법조업에 사용
 - 섬주변 등에 주로 정박하며 야간에만 조업함에 따라 관청의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

2

- 2차에 걸쳐 “무조업어선 일제정비 실시”

* 1차('04.4~'05.3) : 연안어업 무조업어선 300여건 허가취소 등 정비
* 2차('08.8~현재) : 연근해 무조업어선 일제조사 실시중(6억원)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 도입에 대한 입법평가」 제1차 전문가회의

* 어업허가 현황과 어선등록현황을 정보화사업으로 연계, 허가 및 등록현황 정비('09)

□ 정기적인 어업허가 정비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추진 중('09.9~)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에 개정안을 반영하여 관계기관 의견수렴 중

가

1

- 어업허가 처분권자인 시·도지사(시장·군수)로 하여금 허가처분 권한과 관리를 강화하고 부실을 시정하는 계기 마련
⇒ “지자체 주관, 매 5년마다 어업허가 일제정비 추진”
- 연근해어선구조 조정사업의 실효성 확보 및 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어업허가 일제 정비의 범제화” 추진

2

- 주관기관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 협조기관 : 해양경찰청(서), 수협중앙회(지구별·업종별수협), 선박안전관리공단
- 조사기간 : 5년
- 조사대상
 - 1) 어선 실체 없이 어업허가장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 2) 당초 허가받은 어선과 다른 어선
 - 3) 장기간(1년이상) 조업실적이 없는 방치(노후)어선
 - 4) 휴업신고 등 미 이행 어선
 - 5) 타인으로 하여금 어업을 지배하고 있는 어선

3	
---	--

□ 계획수립

-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업허가 일제정비 기본계획」을 2월말까지 수립하여 지자체에 통보
- 지자체에서는 3월 15일까지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시행」

□ 1차 조사대상어선 파악(관계기관 협조 하에 서면조사 실시)

기관별 자료 준비 및 협조할 사항*을 사전 준비하고 해당 자료에 의한 “상호 교차 확인하는 방법”으로 추진

(1) 시·도 및 시·군·구

- 어업허가대장에 등록된 어업허가 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 관할수협, 해경서, 선박안전관리공단에 조사의뢰(3월말까지)

기 관 별	협 조 사 항
● 시·도(시군구)	○ 어업허가 처분현황 작성
● 수 협	○ 면세유류 공급 실적(최근 2년간) ○ 어획물 위관 실적(최근 1년간)
● 해양경찰서(신고소)	○ 출·입항 실적(최근 1년간)
● 선박안전관리공단	○ 선박검사 유무(정기·중간·임시검사 유무)

* 별지 제1호 서식 「어업활동 종사여부 조사의뢰서(안)」 : 불임 1 참조

(2) 협조기관(수협, 해경, 선박안전공단)

- 협조기관에서는 허가어선별 면세유 공급실적, 입출항실적, 선박검사여부 등을 의뢰서식에 따라 조사하여 시·군·구에 통보(5월말)

□ 2차 조사 실시 (위반어선 현장조사)

(1) 시·군·구에서는 통보받은 조사내용을 취합, 분석하여 “현장 조사가 필요한 대상어선을 선정”하여 현장조사 실시(6월~)

* 조사대상 : 4개 조사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누락된 어선은 당초 허가받은 어선을 소유하고 있는지 현장 조사

(2) 시도·시군구 별로 조사대상으로 선정(어업허가를 받은 자)된 자에게 “출석요구 개별통보”

유류공급실적 또는 입출항 보고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도록 통보(10일전 까지 서면으로 통보)

* 지참서류 : 유류공급실적, 입출항보고 실적, 어선검사 현황, 매매매시 관련 영수증 등

(3) 출석한 관계어업인에게 “조사일정과 내용 통보”

○ 동 조사결과에 대해 “관계 어업인인에게 서류 열람”

○ 2차 조사대상 어선에 대한 “현장조사(합동) 일정 통보”

* 방문일시/장소, 방문자, 방문시 조사할 내용 등

(4) “현장조사 실시” 및 조사내용 : 사진 채증 등 증거자료 확보

○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보유 유무

○ 어선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어업허가를 받은 어선과 동일한 지 여부(어선번호, 선박길이 등 확인 점검)

○ 어선으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등

* 별지 제2호 서식 「어선실체 여부 현장조사 결과(안)」: 붙임 2 참조

□ 위반자 조치

(1) 허가받은 어선이 없거나 허가받은 어선과 다른 어선을 소유

○ 행정처분 전 “이의신청이 가능함을 서면통보”하고,

-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입증자료를 지참케 한 후 청문 실시
-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관련절차에 따라 청문 실시

○ “위반사실이 확인(시인)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위반내용	관련법령	조치사항
• 어선실체 없이 어업허가장만 보유하고 있는 자	수산업법 제47조	어업허가폐지(취소)
• 신고 없이 2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자	수산업법 제32조	1차(경고), 2차(취소)
• 휴업신고 등 미 이행 자	수산업법 제32조	1차(경고), 2차(취소)
• 타인지배금지를 위반한 자	수산업법 제34조	1차(경고), 2차(취소)
• 입·출항신고 미이행	선박안전규칙 제13조	1차(경고), 2차(10일), 3차(15일)

*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실체가 없고 이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어업허가는 반드시 폐지

(2) 허가받은 어선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유류공급실적 또는 입출항 보고 실적 등의 입증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도록 통보(10일전 까지 서면으로 통보)
 - * 입증할 만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협조기관에 관련 실적의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 의뢰하여 사실관계 여부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필요 조치
- 어획물 위판실적, 선박검사 등의 사실여부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관련절차에 따라 청문과 행정처분 실시

□ 어업허가 일제정비

-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허가폐지 등 조치결과 등 관련자료 일체를 11월말까지 시·도에 보고
- 시·도에서는 시·군·구 자료를 취합·정리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12월말까지 보고
 - * 별지 제3호 서식 「어업허가 정비 결과보고서」: 붙임 3 참조



- “어업허가 일제정비 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추진
 -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5조(연근해어업의 실태조사 등)에 개정안 반영('10. 4월 시행 예정)
 - 어업허가 일제 정비 추진('11년, 1년간) 및 소요 예산 확보(6억원)

- 실효적 추진을 위해 “어업허가 일제정비 실시요령”을 우리부 훈령으로 마련하여 관련법령 시행시기에 맞추어 시행 예정('10. 4월)
 - * 어업허가 일제정비 실시요령 : 붙임 4 참조

- 어업허가 일제정비의 실효성 확보 및 어업질서확립을 위해 “위변조가 불가능한 「전자어업허가증」으로 전면교체” 검토
 - 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 '10. 2~4월
 -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예산확보(4억원) : '10. 5월~계속
 - 관계법령 개정추진 : '10. 10~12월

[별첨 1]

어업허가 일제정비 실시요령

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000호 2010. 00. 00

제 1 조 (목적)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규칙」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근해어업의 실태조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업무협조와 시·도(시군구)간 업무통일을 기하는데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업허가 일제정비”라 함은 수산업법 제43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법 제32조, 제34조, 제47조를 위반한 어업인에 대해 어업허가를 취소·정지 처분 등의 일련의 행정적 조치를 말한다.(이하 “일제정비”라 한다)
2. “관계기관”이라 함은 어업허가 일제정비에 필요한 자료를 파악하여 제공하는 해양경찰청(서), 수협중앙회(지구별수협포함), 선박안전관리공단을 말한다.

제 3 조 (일제정비 대상어선 등) ①이 요령 제2조 제1호에 의한 일제조사대상어선은 수산업법 제43조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은 연근해어선을 대상으로 한다.

②이 요령 제2조 제1호에 의한 일제정비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선 실체 없이 어업허가장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당초 허가받은 어선과 다른 어선
3. 장기간(1년이상) 조업실적이 없는 방치(노후)어선

- 4. 휴업신고 등 미 이행 어선
- 5. 타인으로 하여금 어업을 지배하고 있는 어선
- ③ 제2조 제1항에 따른 일제정비는 매 5년마다 실시한다.

제 4 조 (계획수립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조 제2호에 따른 일제정비를 실시하는 경우 당해 연도 2월말까지 어업허가 일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도에서는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여 3월 15일까지 시·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5 조 (일제정비 대상어선 파악 등) ① 시·군·구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 “어업활동 종사여부 조사의뢰서”에 어업허가대장에 등록된 어업허가 현황을 3월말까지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계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 1. 최근 2년간 면세유 공급 실적(관할수협)
- 2. 최근 1년간 어획물 위판실적(관할수협)
- 3. 최근 1년간 출입항 실적(해양경찰서)
- 4. 선박검사 유무(선박안전관리공단)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협 등 관계기관에서는 의뢰서식에 의거 조사하고 그 결과를 5월말까지 의뢰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6 조 (현장조사 대상어선) ① 제5조 제2항 따라 통보받은 시·도, 시·군·구에서는 조사결과를 취합, 분석하여 현장조사가 필요한 대상어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대상은 제5조 제1항 각호의 조사 항목중 1개의 항목이라도 누락된 어선으로 한다.

제 7 조 (조사대상 어업인 출석요구 등) ① 제6조 제2항에 따라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어선의 어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지참하여 허가관청에 방문하도록 서면으로 10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1. 유류공급실적
2. 입출항보고 실적
3. 어선검사 현황
4. 어획물 위판 영수증
5. 기타 어업활동을 영위하였다고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관청에 방문한 경우 행정관청에서 실시한 일제정비 조사결과를 열람시켜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조사결과를 열람한 결과 제3조제1항에 따른 일제조사 대상어선임을 인정하거나 제1항에 따른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현장조사계획을 알려주어야 한다.

1. 방문일시 및 장소
2. 방문자
3. 방문시 조사할 내용
4. 기타 협조사항

제 8 조 (현장조사) 시·도, 시·군·구에서는 제7조 제6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어선실체 여부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보유 유무
2. 어선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어업허가를 받은 어선과 동일한 어선인지 여부(어선번호, 선박길이 등 확인점검)
3. 어선으로 사용가능한지 여부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 (위반자 조치 등) ①제8조에 따라 조사한 결과 허가받은 어선이 없거나 허가받은 어선과 다른 어선을 소유하고 있는 등 제3조 제1항에 따른 위반어선으로 확인된 경우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제3조제2항에 따라 위반한 어선의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 (결과보고) 시·군·구에서는 제9조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조치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 “어업허가정비 결과보고서”와 관련 자료 일체를 작성하여 당해 연도 11월말까지 시·도에 제출하여 하며 시·도에서는 자체조사한 결과와 시·군·구 자료를 취합하여 12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요령은 시행한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어업활동 종사 여부 조사 의뢰서(안)

① 시·도 (시군구)	② 허가번호 (허가기간)	③ 어업의 종 류	소 유 자		조 사 내 용					
			④ 주 소	⑤ 성명	⑥ 면세유류 공급여부	⑦ 어 획 물 위판유무	⑧ 출입항 신고여부	⑨ 선박검사 유 무	⑩ 기타사항	

주1 : ①~⑤란은 어업허가관청에서 작성

① 지자체 명칭대로 표기 작성(예 : 통영시, 완도군)

② 어업허가번호는 어업허가관청에서 발급한 허가번호를 그대로 기재(예 : 2008-01호(2005.1~2010.1))

③ 어업의 종류 란에는 어업허가증에 명시된 사항을 그대로 표기하되, 1개 이상 허가일 경우에는 모두 표기

④⑤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실제 주소 및 성명 기재

주2 : ⑥~⑩란은 협조기관에서 작성

- ⑥ 면세유류 공급여부는 관할 수협에서 관련서류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연간공급횟수·공급량을 기재하고, 없는 경우에는 “없음”으로 기재
- ⑦ 어획물 위판여부는 관할 수협에서 관련서류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위판횟수를 기재하고 없는 경우 “없음”으로 기재
- ⑧ 출입항 실적이 있는 경우는 그 횟수를 기재
- ⑨ 관할 선박검사기술협회의 관련서류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최근 검사일(예 : 2007.12.15)을 기재하고 검사기록이 없는 경우 차기 검사기일을 기록
- ⑩ 기타 특이사항을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어선실체 여부 현장조사 결과(안)

① 시·도 (시군구)	② 허가번호 (허가기간)	③ 어업의 종 류	소 유 자		조 사 결 과						
			④ 주 소	⑤ 성명	⑥ 어선보유 여 부	⑦ 허가받은 어선여부	⑧ 면세유류 공급여부	⑨ 어획물 위판유무	⑩ 출입항 유 무	⑪ 선박검사 유 무	

주1 : ①~⑤란은 어업허가관청에서 작성

① 지자체 명칭대로 표기 작성(예 : 통영시, 완도군)

② 어업허가번호는 어업허가관청에서 발급한 허가번호를 그대로 기재(예 : 2008-01호(2005.1~2010.1))

③ 어업의 종류 란에는 어업허가증에 명시된 사항을 그대로 표기하되, 1개 이상 허가일 경우에는 모두 표기

④⑤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실제 주소 및 성명 기재

주2 : ⑥~⑩란은 조사자가 조사결과를 토대로 작성

- ⑥ 허가받은 어선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로 표기하고, 어선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⑦~⑩란에 사실관계를 확인작성
- ⑦ 당초 허가받은 어선과 동일한 어선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맞는 경우 “○”로 표기(확인사항 : 톤수, 어선번호 등 확인)
- ⑧ 면세유류 공급여부는 관할 수협에서 관련서류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연간공급횟수·공급량을 기재하고, 없는 경우에는 “없음”으로 기재
- ⑨ 어획물 위판여부는 관할 수협에서 관련서류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위판횟수를 기재하고 없는 경우 “없음”으로 기재
- ⑩ 출입항 실적이 있는 경우는 그 횟수를 기재
- ⑪ 관할 선박검사기술협회 서류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최근 검사일(예 : 2007.12.15)을 기재하고 검사기록이 없는 경우 차기 검사기일을 기록

[별지 제3호 서식]

어업허가 정비 결과 보고서(안)

① 시·도 (시군구)	② 어업의 종 류	③ 지적건수	허가정비 사항					⑨ 비 고
			④ 계	⑤ 취소	⑥ 어업정지	⑦ 경 고	⑧ 조치불가	

- ① 어업허가관청에 따라 시도와 시군구를 구분하여 작성(지자체 명칭대로 표기 : 예 경상북도, 통영시)
- ② 어업의 종류 란에는 근해·연안·구획어업으로 분류하여 기재하되 어업허가증에 명시된 사항을 그대로 표기
- ③~⑧ 실제 정비한 실적을 기재
- ⑨ ⑧란의 “조치불가”한 사유를 기재

[참고자료]

「전자 어업허가증 시스템」 도입방안

< 추진 배경 >

- ◆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어업의 특성상 “현행의 어업허가증은 바닷물 및 염분에 훼손될 우려가 높은 환경”
 - * 어업허가증 소지의무는 이러한 배경하에 규제완화차원에서 폐지('02)
- ◆ 칼라복사기 성능발전에 따라 “어업허가증을 위·변조하여 어업질서 문란 야기”
- ◆ 어업질서확립 및 어업인 편익 증대를 위해 “위·변조가 불가”하고 “소지가 편리한 전자 어업허가증 도입이 필요”한 시기

1	가
---	---

- 서류에 의해 발급, 보관, 관리하고 있는 “어업허가증을 스마트카드화”하여 염분에 의한 오염 및 훼손 방지
- 어업허가 확인시 디지털기기에 의해 판별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전자 어업허가증시스템” 도입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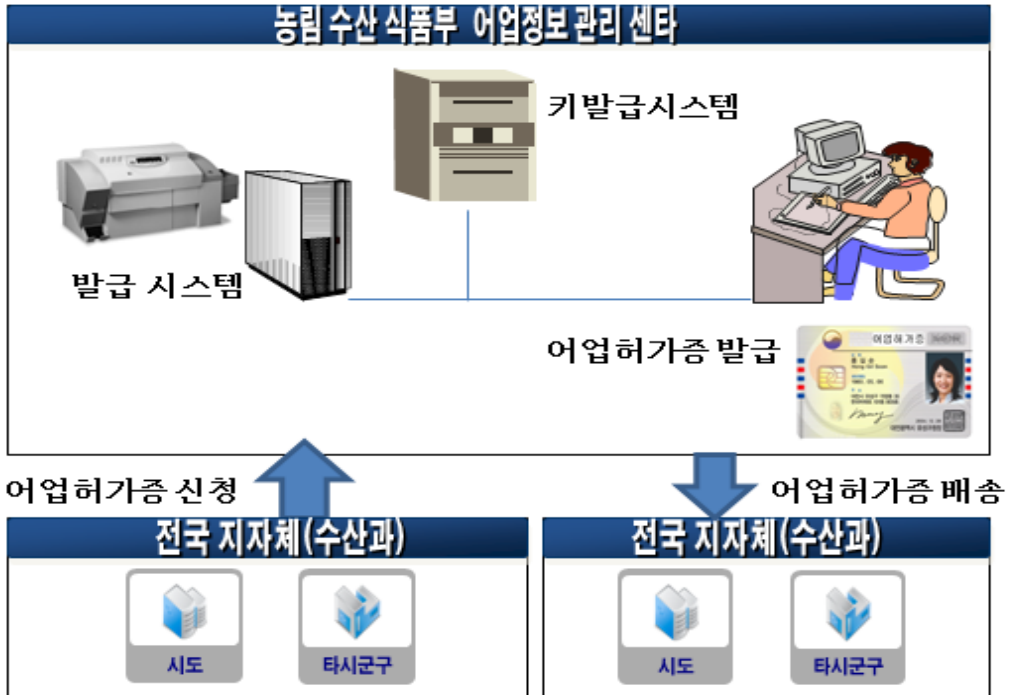
< 現 어업허가증 발급 프로세스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민원 우편
접수 및 처리	○ 전국 지자체에 어업허가증 신청 ○ 발급 3~5일 소요
구비 서류	○ 어업허가증(신고필증)재교부 신청서
관련 법.제도	○ 수산업법 제43조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소관기관	○ 근해어업(시도), 연안 및 구획어업(시군구)

2

□ 시스템 구성

- 어업허가증 발급시스템 서비스 개념도



□ 제안모델(콤비카드 형태)



[그림] 전자 어업허가증 견본

□ 시스템 구성 내역

항 목	주 요 규 격
스마트카드 (어업허가증)	
어업허가증 인증 단말기	

『어업허가 일체정비제도 도입에 대한 입법평가』 제1차 전문가회의

항 목	주 요 규 격
발급 서버	
어업허가증(스마트카드) 발급기	
키발급시스템 (암호화 모듈 포함)	

3	
---	--

< 시범사업 전자어업허가증 도입시 소요예산 >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항목	구성 내역	단가	수량	합계
H/W	○ 스마트 카드 (어업허가증) * 근해어선(3,475척)	10	3,475	34,750
	○ 어업허가증 인증 단말기 * 시도, 시군구, 국가지도선	300	122	36,600
	발급 서버 (OS 포함)	50,000	1	50,000
	스마트카드 발급기(전사포함)	30,000	1	30,000
	키발급시스템 (암호화 모듈 포함)	50,000	1	50,000
소계				201,350
S/W	발급 시스템 S/W	150,000	1식	150,000
	기존시스템 연계	50,000	1식	50,000
소계				200,000
총계				401,350

< 전자어업허가증 전면 도입시 소요예산 >

(단위:원, 부가세 별도)

항목	구성 내역	단가	수량	합계
H/W	스마트 카드 (어업허가증)	10	54,000	540,000
	어업허가증 인증 단말기	300	1,000	300,000
	발급 서버 (OS 포함)	50,000	87	4,350,000
	스마트카드 발급기(전사포함)	30,000	87	2,610,000
	키발급시스템 (암호화 모듈 포함)	50,000	87	4,350,000
소계				12,150,000

4	
---	--

□ 추진방향

- 전면적인 도입에 앞서 우선 “근해어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

□ 추진계획

- 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 '10. 2~4월
-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예산확보(4억원) : '10. 5월~계속
- 관계법령 개정추진 : '10. 10~12월